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0 호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 사업의 요건을 확대하여 민간 사업자와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상화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명 변경)제명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종전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에 한정된 정상화 대상 사업을 확대함

나. “민관합동”의 정의 확대 및 명확화(안 제2조제1호)종전의 민관합동은 토

지를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임대, 매각 및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주체로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함

다. “건설투자사업” 신설 및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삭제(안 제2조제4호, 제5호 삭제)종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만 한정된 정상화 대상을 다양한 사업구조의 개발사업을 망라하는 건설투자사업으로 변경함

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의 신청제한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무분별한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을 방지하고자 특정사항(소송 중인 사항, 단순 민원 관련 사항 등)에 해당하는 신청을 제한함

마.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조정내용 구체화(안 제10조의3 신설)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원하는 건설투자사업의 신청 조건 및 조정내용을 구체화함

바. 민간 사업자 등의 조정계획안 동의 기한 연장(안 제17조제2항)민간 사업자 등의 동의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정계획안의 동의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메일(aries1313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전화번호: 044-201-3419, FAX:044-201-5538, 메일 : aries1313@korea.kr)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